NORO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크린폭시 라이닝 (주제) DHDC-6200(Y) (K-NB-0456)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콘크리트 및 철재의 중도(주제)
○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외 사용 제한

다. 제조사/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주)노루페인트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처 : 031-467-6114 건축기술2팀 이해찬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급성독성물질 흡입2(가스)
발암성물질 1B
생식독성물질 1A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2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3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2
피부 과민성물질 1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2
수생 환경유해성물질 만성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물질 2A
오존층 유해성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 위험 문구 :
H330 (가스)흡입하면 치명적임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1 신체중 면역계, 신장에 손상을 일으킴 (11항 참조(MSDS)).
H335+H336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간장, 정소, 피부, 호흡기, 혈액,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11항 참조(MSDS)).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420 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P260 (분진 ·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4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0 (보호장갑 · 보호의 · 보안경 · 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61 (분진 ·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대응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
P308+P313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09+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폐기
P501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P502 제조자/공급자가 제공한 재생용·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시오.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NFPA지수 / 물질명	보건	화재	반응성
탄산 칼슘	2	0	0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2	1	0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1	1	0
Dodecylphenol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1	0	0
벤질 알코올	2	1	0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에틸벤젠	2	3	0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1	2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탄산 칼슘	Calcium carbonate	471-34-1	55~65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25068-38-6	29~39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 (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ymers	69430-35-9	1~10
Dodecylphenol	Dodecylphenol	27193-86-8	1~10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Rutile(TiO2)	1317-80-2	1~10
벤질 알코올	Benzyl alcohol	100-51-6	1~10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Xylene	1330-20-7	1~10
에틸벤젠	Ethylbenzene	100-41-4	0.1~4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64742-95-6	0.1~4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때 :
자극, 통증 부기, 눈물 눈부심등 기타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노출된 눈을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행구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자극,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시오.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섭취한 물질의 위 세척을 통한 조기 제거는 출혈이나 관통의 전위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의로부터 받을 것.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 할 것. 구토를 시키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물은 소화제로 적절하지 못함.
○ 대형 화재 시 :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 탱크 등의 폭발 위험 경우 800M 이상 이격할 것. 바람을 등지고 막대한 양의 소화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생성물 :
이산화탄소, 유독 탄소화합물/질소화합물/황화합물
○ 화재 및 폭발 위험 :

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착용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열모, 방열장갑, 방열 장화
○ 예방조치 :
화재 진압 인원외 인원이 화재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화재 진화 후 상당 시간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화재시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키시오. 적응 가능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착용할 보호구 :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
○ 조치사항 :
피부접촉을 피할 것.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 발생 증기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 위험하지 않은 경우만 누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 토양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을 깊은 물웅덩이의 바닥이나 격리수용 가능한 장소 또는 모래주머니를 쌓은 방벽 내로 옮기시오.
○ 수중 :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다량 누출 시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시 국소배기 및 환기장치 등을 이용할 것 유증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등을 밀폐할 것 정전기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등을 실시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라 저장. 취급 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격리된 장소에 저장, 결빙주의, 고온체 주의. 강산화제, 산과 접촉을 피하시오. 보관 적정 온도 : 5~35℃ 옥외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할 것. 수분 증발 및 오염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는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가 좋은 옥내에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1) 탄산 칼슘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8) 에틸벤젠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자료 없음
자료 없음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 눈 보호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세안기구(식염수) 비치 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 보호 :
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유색의 액체

나. 냄새 : 특취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사.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71℃

아. 인화점 : 74

자.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차. 인화점(고체, 기체) : 자료없음

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타. 증기압 : 자료없음

파. 용해도 : (물)불용성

하. 증기밀도 : 자료없음

거. 비중 : 1.5 ± 0.3

너. N-옥탄올/물 분백계수 : 자료없음

더. 자연발화 온도 : 425

러.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머. 점도 : 30~250Poise

서.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자료 없음

나. 피해야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마찰, 오염을 피하시오 열, 스파크, 불꽃, 기타 점화원과 접축을 피하시오.

다. 피해야할 물질 :
산화제, 금속, 가연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탄소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폐이상, 호흡곤란, 저체온, 구토…….
○ 입을 통한 섭취 : 구토, 설사, 위통, 불규칙 심장박동….
○ 피부 접촉 : 자극, 화상, 신경이상….
○ 눈 접촉 : 자극, 눈손상….

나. 건강 유해성 정보
1) 탄산 칼슘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6450 ㎎/㎏ Rat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Draize tes의 보통 자극, 사람에게자극 보임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래빗-Draize tes의 극한 자극, 사람에게 경미한 자극을 보임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tro Salmonella typhimurium Ames test시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 생식독성 : In vitro Salmonella typhimurium Ames test시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흡입시 자극을 일으킴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노출에 의해 혈액계이상, 위장장애, 호르몬계 이상을 일으킴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000 ㎎/㎏ Rat
- 경피 : LD50 > 20000 ㎎/㎏ Rabbit
- 흡입 : LD50 > 20000 ㎎/㎏ Rabbi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토끼 피부 자극성을 가짐(CERI Hazard 자료 2002) -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38(피부에 자극성을 일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토끼 눈 자극성을 가짐(CERI Hazard 자료 2002) - 토끼의 STANDARD DRAIZE TEST에서 중간 이상의 자극을 보임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43(피부 접촉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In vitro CHL cells, 대사활성화 없는 염생체이상시험에서 양성이었으며, 대사활성화 있는 시험에서는 음성. - Salmonella typhimurium시험에서 양성
○ 생식독성 : - In vitro CHL cells, 대사활성화 없는 염생체이상시험에서 양성이었으며, 대사활성화 있는 시험에서는 음성. - Salmonella typhimurium시험에서 양성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24000 mg/kg Rat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계 이상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230 mg/kg Rat
- 경피 : LD50 = 2000 mg/kg Rabbit
- 흡입 : LD50 = 2000 mg/kg Rabbi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보통자극(100mg, 24시간, rabbit)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비자극성(rabbit)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 급성 독성
- 경구 : LD50=3550 mg/kg rat
- 경피 : LD50 4350 mg/kg Rabbit
- 흡입 : LD50 4350 mg/kg Rabbi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중등도의 자극성을 일으킴.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중등도의 자극성을 일으킴.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Group 3
OSHA : 자료 없음
ACGIH : A4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사람 경세대 역학 음성, 체세포 in vivo 변이원성시험(소핵시험·염색체시험) 음성
○ 생식독성 : 사람 경세대 역학 음성, 체세포 in vivo 변이원성시험(소핵시험·염색체시험) 음성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8) 에틸벤젠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3500 ㎎/㎏ Rat

- 경피 : LD50 = 15400 ㎎/㎏ Rabbit
- 흡입 : LD50 = 15400 ㎎/㎏ Rabbi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성, 회복 가능한 손상을 일으킴.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2
IARC : Group 2B
OSHA : 자료 없음
ACGIH : A3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소핵시험 음성 (7)
○ 생식독성 : 소핵시험 음성 (7)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실험동물에서 중추신경계 영향 및 기도 자극을 일으킴.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탄화수소.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동점성률 0.74 ㎟/s (25 ℃)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8400 ㎎/㎏ Rat
- 경피 : LD50 > 2000 ㎎/㎏ Rabbit
- 흡입 : LD50 > 2000 ㎎/㎏ Rabbi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약한자극(rabbit)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약한자극(rabbit)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비과민성(Guinea Pig)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Carc. 1B
○ 생식세포 변이원성 : EU CLP: 1B (해당 물질이 중량 비율로 0.1% 미만의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본 분류를 적용하지 않음)
○ 생식독성 : EU CLP: 1B (해당 물질이 중량 비율로 0.1% 미만의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본 분류를 적용하지 않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침. 고농도 증기 흡입은 의식상실을 일으킬 수 있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흡인시 유해 우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1) 탄산 칼슘
○ 어류 : LC50 > 56000 ㎎/ℓ 96 hr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EC50 = 22000 ㎎/ℓ 96 hr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 어류 : LC50 = 1.41 ㎎/ℓ 96 hr Oryzias latipes
○ 갑각류 : EC50 = 1.7 ㎎/ℓ 48 hr
○ 조류 :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어류 : LC50 = 35.988 ㎎/ℓ 96 hr
○ 갑각류 : LC50 = 39.180 ㎎/ℓ 48 hr
○ 조류 : EC50 = 24.821 ㎎/ℓ 96 hr

6) 벤질 알코올
○ 어류 : LC50 = 10 ㎎/ℓ 96 hr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8) 에틸벤젠
○ 어류 : LC50 = 9.09 ㎎/ℓ 96 hr
○ 갑각류 : LC50 = 0.4 ㎎/ℓ 96 hr
○ 조류 : 자료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어류 : LC50 = 9.22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 갑각류 : EC50 = 6.14 ㎎/ℓ 48 hr Daphnia magna
○ 조류 : EC50 = 19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나. 잔류성 및 분해성
1) 탄산 칼슘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 잔류성 : log Kow = 2.821 (Estimates)
○ 분해성 :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 잔류성 : log Kow = 1.1
○ 분해성 :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8) 에틸벤젠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잔류성 : log Kow = 2.1 ~ 6 (Estimates)
○ 분해성 : BOD5/COD = 0.43

다. 생물농축성
1) 탄산 칼슘
○ 농축성 : BCF = 3.162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 농축성 : BCF = 0.56 ~ 0.67 (Exposure concentrations:10ug/l, 5.6<= BCF=<6.8(Exposure concentrations:1ug/l))
○ 생분해성 : Biodegradability = 0 (%) 28 day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 농축성 : BCF = 10.38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Biodegradability = 94 (%) 28 day (Aerobic, Activated Sludge)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39 (%)

8) 에틸벤젠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라. 토양이동성
1) 탄산 칼슘
Koc = 4.971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log Kow = 3.12 (measured) (ortho), 3.2 (measured) (meta), 3.15 (measurements) (p) (5)

8) 에틸벤젠
log Kow = 3.15 (11)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1) 탄산 칼슘
자료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자료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자료 없음

4) Dodecylphenol
자료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자료 없음

6) 벤질 알코올
자료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자료 없음

8) 에틸벤젠
자료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3082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환경유해물질, 액체, 별도 등재명이 없는 것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9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III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A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F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발암성물질"

1) 탄산 칼슘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탄산칼슘TWA : 10 mg/㎥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4) Dodecylphenol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이산화티타늄TWA : 10 mg/㎥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6) 벤질 알코올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노출기준설정물질 : 디메틸벤젠TWA : 100 ppm, STEL : 150 ppm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8) 에틸벤젠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노출기준설정물질 : 에틸 벤젠TWA : 100 ppm, STEL : 125 ppm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금지물질 : 해당 없음
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1) 탄산 칼슘
기존물질 : 해당 없음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기존물질 : KE-24000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25068-38-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9-2-8 25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중합체 1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기존물질 : KE-20154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4) Dodecylphenol
기존물질 : KE-13007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기존물질 : 해당 없음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6) 벤질 알코올
기존물질 : KE-02570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기존물질 : 해당 없음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크실렌[Xylene; 1330-20-7]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5 85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8) 에틸벤젠
기존물질 : 해당 없음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에틸벤젠 0.1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기존물질 : KE-31662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관찰물질 : 해당 없음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비위험물

1) 탄산 칼슘
해당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해당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해당 없음

4) Dodecylphenol
해당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해당 없음

6) 벤질 알코올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8) 에틸벤젠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탄산 칼슘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2)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3) 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합물(HYDROGENATED HYDROCARBONS, C6-20, POL...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4) Dodecylphenol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5) 금홍석(이산화 티타늄)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6) 벤질 알코올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7)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8) 에틸벤젠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9)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근거하여 국내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본 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 : 2018-01-10 오후 1:23:05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2회(2018-03-22 오전 1:50:12)

라. 기타 : MSDS 게시 정보 " WWW.NOROO.CO.KR"